

[별표 4]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심사종류 및 시기(제7조제1항 관련)

구분	서면 심사	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심사	제품심사		확인심사	제품심사 시기
			개별 제품심사	형식별 제품심사		
1.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·기구 및 설비						
가. 프레스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나. 전단기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다. 절곡기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라. 크레인	심사 대상	심사대상 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)	심사대상 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)	심사대상 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)	심사대상 (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)	-최초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완 료한 때(개별제품 심사 대상) -출고 전(형식별제 품심사 대상)
마. 리프트	심사 대상	심사대상 (이삿짐운반용 리프트)	심사대상 (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리프트)	심사대상 (이삿짐 운반용 리프트)	심사대상 (이삿짐 운반용 리프트)	-최초설치 또는 이전 설치를 완 료한 때(개별제품 심사 대상) -출고 전(형식별제 품심사 대상)
바. 압력용기	심사 대상	-	심사대상	-	-	출고 전
사. 롤러기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아. 사출성형기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자. 고소작업대	심사 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
차. 곤돌라	심사 대상	심사대상 (좌석식 곤돌라)	심사대상 (좌석식 곤돌라제외)	심사대상 (좌석식 곤돌라)	심사대상 (좌석식 곤돌라)	-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 료한 때(동일 사 업장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 한 개별제품심사 대상) - 출고 전(형식별 제품심사 대상)

2. 영 제74조 제1항 제2호의 방호장치	심사대상	심사대상 (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)	-	심사대상	심사대상 (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)	출고 전 (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마다)
3. 영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구	심사대상	심사대상 (제5조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)	-	심사대상	심사대상 (제5조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제품 제외)	출고 전 (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은 수입시마다)
4.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할 경우	심사대상	심사대상	-	심사대상	심사대상	출고 전 또는 설치를 완료한 때